

직속기관 종합감사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5
2) 연구실 안전관리 부적정	11
3)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 부적합시료 지연 통보	15
4)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0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2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반,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에 앞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4. 13. 부터 4. 19.까지 5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4. 19.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1945년 10월 경상남도 위생시험소로 시작,
1987년 12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초전동)
- 주요업무 : 쾌적한 환경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식의약품 안전, 대기, 생활환경, 물,
토양, 폐자원, 해양 등 보건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분석과 조사연구를 수행

2. 기구 및 인력·예산 규모 (‘23년 기준)

- 기 구 : 2과 4부
 -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 직 원 : 정원 117명 / 현원 115명
- 예산규모 : 16,810백만 원(국비 1,771, 군특 67, 도비 14,596, 기금 376)

3. 주요 현안 사업

- 먹는물 안전을 위한 ‘지하수이용 먹는물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 수질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관련기관 맞춤형 분석기술 컨설팅’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0건(본처분 5, 현지조치 5)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기타
계	13	2	8	3	19	-	5	14	424	424	-	-	-
처분요구	7	-	5	2	19	-	5	14	0	-	-	-	-
현지조치	6	2	3	1	-	-	-	-	424	424	-	-	-

※ '처분요구'에서 행정상 '통보 2건'과 '주의 2건'은 중복 집계로 순수 처분요구 건수는 5건이고, '현지조치'에서 행정상 '통보 1건'과 '주의 1건'도 중복 집계로 순수 현지조치 건수는 5건임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 연구실 안전관리 부적정
-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 부적합시료 지연 통보
-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서1)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그리고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제4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건강검진) 제1항에 따라 [표 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구분	유해인자 분류	종류
계		181종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가솔린, 벤젠 등)	109종
	나. 금속류(구리 등)	20종
	다. 산 및 알칼리류(무수 초산 등)	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a-나프틸아민 등)	12종
	바.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 미스트)	1종
2. 분진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7종
3.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4. 야간작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요약 발췌]

아울러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제5항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은 [표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	주기
계	181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1~12개월 이내	6~24개월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요약 발췌]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시기 및 주기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 11. 18. ~ '23. 4. 19.) 내 배치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유해인자 취급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배치전건강진을 실시하고 신규 배치하여야 함에도 [표 3]과 같이 배치된 34명 중 8명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유해인자 취급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현황

구분	유해업무 취급업무 배치일자	검진 대상자	당시 배치부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여부
계	'21. 1. ~ '22. 1.	34명	4개 연구부서	실시 26명(면제포함), 미실시 8명
2021년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X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면제대상
	'21. 1. 4.	○○○	○○○○○○부	X
	'21. 1.18.	○○○	○○○○○부	면제대상
	'21. 6.28.	○○○	○○○○○부	X
	'21. 7.19.	○○○	○○○○○부	면제대상
	'21. 7.19.	○○○	○○○○○부	면제대상
	'21. 7.19.	○○○	○○○○○부	면제대상
	'21. 7.26.	○○○	○○○○○부	면제대상
	'21. 7.26.	○○○	○○○○○부	면제대상
	'21. 8. 2.	○○○	○○○○○부	X
	'21. 8. 2.	○○○	○○○○○부	X
	'21. 8. 2.	○○○	○○○○○부	X
	'21. 8. 2.	○○○	○○○○○부	X
	'21. 8. 2.	○○○	○○○○○부	X
2022년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22. 1.12.	○○○	○○○○○부	○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감사대상기간('20. 11. 18. ~ '23. 4. 19.)내 배치된 유해인자 취급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시기 및 주기에 맞게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표 4]와 같이 연구활동종사자 50명에 대하여 유해인자 취급업무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규정된 시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주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하게 하는 등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현황

구분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시기			주기	
	1개월내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자)	2개월내 (벤젠 취급자)	6개월내 (아세톤, 메탄올 등 취급자)	6개월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아클로니트릴 등 취급자)	12개월 (아세톤, 메탄올 등 취급자)
계 (50명)	7명	6명	1명	21명	15명
2022년 상반기 (21명)	5명	4명	-	12명	-
2022년 하반기 (29명)	2명	2명	1명	9	15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과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건 발생의 근본 원인은 특수건강검진 업무가 전담부서(도 ○○○○○○과)에서 총괄 실시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담부서의 반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하달된 업무의 전파·취합에 중점을 두고 제한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신속대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도 ○○○○○○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검진대상자 교육 실시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의 의무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 전담부서인 도

○○○○○○과에서 예산 편성, 검진기관 안내(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연구종사자들의 유해인자 취급 현황 및 특수건강검진 법정시기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 요청했어야 했고, 기관(부서) 차원의 협의나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활동종사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이 규정된 시기에 실시되지 않거나 주기에 맞지 않게 실시된 '21년, '22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대국민 백신예방접종, 건강검진지정 병원의 수검역량 애로 등 시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이었고, 도 전체의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과에서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조직상 문제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아닌 행정상 처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검진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시주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주관부서(○○○○○○과) 협의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정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제 목 연구실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 ○○○○○부, ○○○○○부, ○○○○○부)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각 연구부서(○○○○부, ○○○○○부, ○○○○○부, ○○○○○부)에서는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염병실험실 등 29개 연구(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¹⁾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연구실안전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제2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실안전법」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르면

1)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함

연구주체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연구실안전법」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각 연구부서(○○○○○부, ○○○○○부, ○○○○○부, ○○○○○○부)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21. 6. 2.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각 연구부서에서는 연도별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연도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부 (‘20. 4. 6.)	○○○○○부 (‘21. 6. 2.)	○○○○○부 (‘22. 5. 2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심의)	‘20. 4. 22	미이행	‘22. 6. 9.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결과)	○○○○○○○협회 '20. 6. 29	○○○○○○○협회 '21. 9. 30.	○○○○○○○협회 '22. 7. 20.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표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각 연구부서 (○○○○○부, ○○○○○부, ○○○○○부, ○○○○○부)에 [표 2]와 같이 소속된 연구실책임자는 실시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전산 정보망에만 분석내용을 입력처리하였을 뿐 2023. 4. 19. 감사일 현재까지도 원장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책임자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현황

소속	연구실 명칭	연구실책임자 ('23. 4. 19. 현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일자		
			2021년	2022년	2023년
○○○○○부	○○○○○실	○○○	'21. 6.25.	-	-
	○○○○○○○실	○○○	-	'22.10.17.	'23. 1.31.
○○○○○부	○○○○○실(○○○)	○○○	-	-	'23. 3.19.
○○○○○부	○○○○○1	○○○	-	-	-
	○○○○○2	○○○	'21. 6.24.	-	-
	○○○○○3	○○○	'21. 3. 8.	-	-
	○○○○○4	○○○	-	-	-
○○○○○○○부	○○○○○○○실	○○○	-	-	'23. 4.14.
○○○○○부	○○○○○실	○○○	-	-	-
	○○○○○실	○○○	-	-	-
	○○○○○	○○○	'21.11.23.	-	'23. 3.30.
	○○○○○실	○○○	'21. 6.28.	-	-
	○○○○○실	○○○	'21. 6.28.	'22. 6.22.	-
	○○○○○실	○○○	-	-	-
	○○○○○○○실	○○○	'21. 6.28.	-	-
○○○○○부	○○○○○○○실	○○○	-	-	'23. 3.28.
	○○○○○○○실	○○○	-	-	-
	○○○○○실	○○○	'21.11.26.	-	-
	○○○○○실	○○○	-	-	-
	○○○○○실	○○○	'21. 6.24.	-	-
	○○○○○○○실	○○○	'21. 6.24.	-	-
	○○○○○실	○○○	-	-	-
	○○○○○○○실	○○○	'21. 6.24.	-	-
	○○○○○○○○○실	○○○	-	-	-
○○○○○부	○○○○○실	○○○	-	-	-
	○○○○○○○○○실	○○○	'21.11.23.	-	-
	○○○○○실	○○○	'21.11.23.	-	-
	○○○○○실	○○○	-	-	-
	○○○○○실	○○○	-	-	-

※ 해당년도 실시 일자 공란(미실시)의 경우, 감사대상기간 시점('20.11월) 이전 또는 이후에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실에 유해인자 등의 여건 변동사항 없는 사유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임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을 위반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부 ○○○○○○○○ ○○○, ○○○○○부 ○○○○○○○○ ○○○(현 ○○○○○○○○, ○○○○○○○○장), ○○○○○부 ○○○○○○○○ ○○○(현 ○○○○○○○○, ○○○○○부 ○○○○○장), ○○○○○부 ○○○○○○○○ ○○○, ○○○○○부 ○○○○○○○○ ○○○, ○○○○○부 ○○○○○○○○ ○○○(현 ○○○○○부 ○○○○○장)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 부적합시료 지연 통보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부)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부에서는 점검기관¹⁾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 의뢰를 받고 해당 시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대기 및 폐수 오염도 검사 실시 내역

분 야	2020년			2021년			2022년		
	검사 건수	기준 초과 건수	기준 초과율 (%)	검사 건수	기준 초과 건수	기준 초과율 (%)	검사 건수	기준 초과 건수	기준 초과율 (%)
폐수배출시설	1,913	68	3.6	1,754	87	5.0	1,435	101	7.0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지도점검규정”이라 한다)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에 따르면 점검기관의 지도·점검 공무원은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고 되어 있다.

1) 경상남도 및 도 내 18개 시·군

그리고 「지도점검규정」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하고,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산정 관련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초과 배출부과금 산정 관련 사항

구 분	수질 배출부과금	비고
부과대상 오염물질 (원/kg)	BOD(250), TOC(450), SS(250), 총질소(500), 총인(500), 크롬(75,000), 망간(30,000), 아연(30,000), 페놀류(150,000), 시안(150,000), 구리(50,000), 카드뮴(500,000), 수은(1,250,000), 유기인(150,000), 비소(100,000), 납(150,000), 6가크롬(300,000), 폴리염화비페닐(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300,000)	
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kg부과금액×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③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④지역별 부과계수×⑤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⑥위반횟수별 부과계수×⑦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조업일수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일까지의 일수)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에서는 점검기관에서 검사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검사하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점검기관에 알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속한 시설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배출부과금액 산정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에서는총 71건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분석 종료 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고 짧게는 1일, 길게는 7일간 지연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지연통보 일수만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주의 시설개선 조치가 늦어져 [표 3]과 같이 1일당 배출부과금 부담이 작게는 260원, 많게는 42,509,010원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산출 추정내역

(단위 : mg/l, 원)

연번	검체번호	초과 항목	초과 농도	초과배출부과금 산출내역	1일 기준 초과배출부과금	비고
				4건 산출 추정		
1	D2-600-2	COD	46(40)	$450 \times [(46-40) \times 10^{-6} \times 5,000] \times 3 \times 1 \times 5.8247 \times 1.1$	260	
2	D2-607-1	COD	346.4(40)	$450 \times [(346.4-40) \times 10^{-6} \times 56,000] \times 7 \times 1 \times 5.8247 \times 1.2$	377,780	
3	B2-20111-1	SS	6,800(30)	$250 \times [(6,800-30) \times 10^{-6} \times 440,000] \times 7 \times 1 \times 5.8247 \times 1.4$	42,509,010	
4	B3-1592-1	크롬	4.797(2)	$75,000 \times [(4.797-2) \times 10^{-6} \times 25,000] \times 6 \times 1 \times 5.8282 \times 1.1$	201,730	

※ 1일 유량은 처리용량으로 산정하고 위반 횟수는 1회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부과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보건환경연구원 ○○○○○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접수된 모든 시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시험성적서의 통보 등)에 따른 표준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기준 초과 시료에 대한 재실험 및 확인(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보다 신중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분석하여 실험 결과를 결재받은 경우도 있어, 분석 당일 통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증을 위한 실험을 한다고 하였는데 검증을 위한 실험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 처리 규정」 제8조(시험과정의 기록)에 따라 시험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검증을 위한 실험은 시험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아 검증 실험을 하였다는 연구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다 신중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퇴근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분석하여 결과를 결재받은 경우는 초과 일수에서 주말은 제외하여 초과 일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주중 조업시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말에 시설 개선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초과 내역을 확인한 경우는 더욱더 점검기관에 지체없이 통보를 하여 사업장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속한 시설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배출부과금액 산정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부에서 폐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료 결과 통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폐수 분석 결과 통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면에서 과실 여부가 가깝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 건은 업무성격상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폐수 분석 및 통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계속·반복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경과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감독책임자보다는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시료에 대한 통보 업무를 지연 처리한 실무담당자 ○○○○○부 ○○○○○○○○ ○○○, ○○○○○부 ○○○○○○○○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부 ○○○○○○○○ ○○○, ○○○○○부 ○○○○○○○○ ○○○(현 ○○○○ ○○부), ○○○○○부 ○○○○○○○○ ○○○(현 ○○○○○○○부)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합니다.(훈계, 주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② 폐수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료에 대하여 지체없이 점검 기관에 알릴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보건환경연구원(○○과)
 조 치 기 관 보건환경연구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금액기준에 따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 ¹⁾ 에 의함
1인 이상 견적제출 ²⁾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재구성]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회계과-22194호(2007.10.12.) 및 회계과-13071호(2020.3.25.)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시행**

구분	공사	용역	물품	비고
도자체기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단가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부터 순서대로 <별표 1>³⁾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수의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단가계약 체결없이 부적정한 분할계약 업무처리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 11. 18.부터 '23. 4. 19. 감사일 현재까지)동안 총 15건의 복합복사기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2]와 같이 매년 추정가격 2천만 원4)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년간 총 15건, 74,047천 원을 부적정하게 분할하여 ○○○○○(대표 : ○○○)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2020~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복합복사기 분할계약 현황*

구분	연도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업체
계		15건		74,047,220	
1	2022	2023년 ○○과 복합복사기 임차 용역 등 5건	'23. 1. 1. ~ '23. 12. 31.	24,501,840	○○○○○ (대표:○○○)
2	2021	2022년 ○○과 복합복사기 임차 용역 등 5건	'22. 1. 1. ~ '22. 12. 31.	24,502,360	
3	2020	2021년 ○○과 복합복사기 임차 용역 등 5건	'21. 1. 1. ~ '21. 12. 31.	25,043,020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수의계약 배제업체 확인없이 부적정 계약체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2022. 4. 12.부터 2022. 7. 12.까지 ○○○○ ○○○ ○○○(대표 : ○○○)와 ○○○○○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3]과 같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10일 이상 납품을 지체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임을 통보받고도 수의계약 배제업체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역

계약상대자(대표자)	제제기간	계약기간	계약금액(천원)	배제업체 통보기관
○○○○○○○○○○○○○○○○ (○○○)	'22.3.25.~ '22.6.24.(3개월)	'22.4.12.~ '22.7.12.	26,435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4) 경상남도 기준(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금액 : 추정가격 1천만 원)

그리고 2022. 1. 12. (주)○○○○○와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 ○○○○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았으나, [표 4]와 같이 1~2순위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하지 않고, 차 순위인 3~4위의 ○○○○로부터 계약이행 여부(계약포기서 제출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

[표 4]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 ○○○○ 용역 개찰내역

순위	상호명	견적금액 (천 원)	견적률 (%)	수의계약 배제사유	배제업체 지정여부	계약여부
1	○○○○(주)	31,000	88.2	포기서제출	부	미체결
2	○○○○ 주식회사	31,600	89.907	포기서제출	부	
3	○○○○ 주식회사	31,900	90.761	미확인	-	
4	○○○○ 주식회사	32,600	92.753	미확인	-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3~4위)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견적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고, 낙찰자가 없다는 사유로 [표 5]와 같이 (주)○○○○○와 부적정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3,32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5] 차순위 계약상대자가 아닌 1인 견적 계약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상호명	예정가격(A)	견적금액(B)	계약기간	견적률 (B/A x 100%)	최대절감 가능액 ⁵⁾
(주)○○○○○	35,147	34,320	'22.1.13. ~ '22.12.31.	97.646	3,320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보건환경연구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서별 일상경비출납원이 별도로 없어 원내 모든 계약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고, 계약

5) (주)○○○○○ 견적금액(34,320천원) - 1순위 ○○○○(주)의 견적금액(31,000천원)의 차액

관련 법령 등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업무연찬이 부족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업무연찬 실시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분할계약과 수의계약 배제업체 확인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 파견), ○○과 ○○○○○○○ ○○○, 실무담당자 ○○과 ○○○○○○○ ○○○(현 ○○○○○○○ 파견)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고, 「지방계약 집행기준」 제5장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한 당시 실무책임자 ○○과 ○○○○○○○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부)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용

1] 내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한다)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및 제4조의2(출장공무원)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3. 여비의 계산방법,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에 따르면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은 출장시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나,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부 ○○○○○○○○ ○○○, ○○○○○○○○ ○○○은 2022. 11. 17. ~ 11. 18.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제69회 ○○○○○○○○ ○○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무의 형편상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출발 일자를 하루 앞당겨, 1) 2022. 11. 16. ~ 11. 18.까지 “○○○○○○○○ 참석”이라는 출장명의로 관외출장 신청을 ○○○○○부장으로부터 결재받았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2022. 11. 16.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오전 9시 32분 진주에서 출발하여 오후 12시 35분 출장지인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 정규근무 시간인 18시²⁾까지 5시간을 출장명령에 따른 공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³⁾하였다.

- 1) 2022. 11. 17.에서 11. 18.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제69회 ○○○○○○○○ ○○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날 11. 16. 오전에 출발한 ○○○○○○○○ ○○○○○부 직원 2명과 달리, ○○○○○부 직원 5명은 해당 ○○대회의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12:4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날 출발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당일 11. 17. 오전에 출발한 사실이 있음
-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음
- 3) 감사 수행 기간 중 ○○○○○○○○ ○○○, ○○○○○○○○ ○○○의 진술에 따르면 2022. 11. 16. 오후 12시 35분 제주도 도착 후 18시까지 익일 개최할 학술대회 장소인 ○○ ○○○○○○ ○○ 위치를 미리 답사하였으며, ○○○○○○○○에서 2023년도 연구사업으로 선정할 도내 유통 수산물 등의 히스타민 함량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수산물의 유통 실태, 안전성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고 하나, 관련한 내부 방침, 출장복명서 등의 공문서는 없음

[표 1] 보건환경연구원 ○○○○○부(○○○, ○○○) 관외출장 일정표

일정	시간	○○대회(출장목적) 공식 일정	출장자 실제 일정
'22. 11. 16.(수)	09:00 ~ 12:35	없음	근무지(진주)에서 출장지(제주도) 이동
	12:35 ~ 18:00	없음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용무
'22. 11. 17.(목)	09:00 ~ 12:40	등록 및 포스터 게시	○○ 현장 등록 및 시찰 (포스터 게시물 및 홍보 부스 관람)
	12:40 ~ 19:20	○○대회 프로그램 진행 및 포스터 발표	○○대회 프로그램 참석 및 포스터 발표 청취
'22. 11. 18.(금)	08:30 ~ 14:10	○○대회 프로그램 진행 및 포스터 발표	○○대회 프로그램 참석 및 포스터 발표 청취
	14:10 ~ 20:00	폐회(14:10 ~ 14:30)	출장지(제주도)에서 자택(진주) 이동

[출처 : 보건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감사자 판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4)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무를 수행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출장 전후의 관리 철저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 ○○ ○○대회 공식일정 전날 오전 11:35분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서 12:35분쯤 제주공항에 착륙 후 제주 시내 이동에 따른 늦은 점심 식사 후 익일 ○○대회가 열릴 ○○ ○○ ○○○○○○ 위치를 사전 답사하였고, 이어서 ○○ ○○○ ○○으로 이동 후 '23년도 추진 예정된 연구사업 테마인 '○○ ○○ ○○○ ○○ ○○○○ ○○ ○○○○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 수산물 유통 실태 등 현황을 살펴보았다고 하면서, 학회 참석이 주목적이기에 해당 건 관련 출장신청서나 복명서에는 아쉽게도 기록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항을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못한 미숙함이 출장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당사자 : ○○○○○부 ○○○○○○○○ ○○○, ○○○○○○○○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2. 11. 16. 12:35 제주공항 도착 후 지방 공무원 근무시간인 13시부터 18시까지 익일 ○○대회가 개최될 ○○ 사전답사 및 '23년도 연구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현지 수산물 유통 실태 등 현황을 살펴보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해당 출장기간인 2022. 11. 16. ~ 11. 18.은 “○○○○○○○ 참석”이라는 출장명으로 상사의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 참석”과 무관한 ○○대회 개최지 사전답사 및 제주도 현지 수산물 유통 실태 현황 파악이 “상사의 명”에 따르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출장명 그대로의 “해당 공무 수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회 개최지 사전 답사 및 현지 수산물 유통 실태 등 현황을 살펴보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역시 전무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이 참석하였던 '22. 11. 17. ~ 11. 18.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 ○○○○대회는 공식 일정시작시간이 '22. 11. 17. 09:00부터이고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22. 11. 16. 역시 ‘여행 일수’(출장 일수)에 포함가능하다고 해석되어지나, 해당 조항은 예외 조항으로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전날 출장을 갔더라도 오후 정규 근무시간인 5시간(13시~18시)을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배치되어 출장목적에 따른 공무수행 외의 행위를 한 점을 보면 전날 아침에 출발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